

# 상 소 권 회 복 청 구

사 건 2000고단 000호 00

피고인 0 0 0

# 청 구 취 지

피고인에 대한 귀원 20○○고단 ○○○호 ○○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 권을 회복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이 유

- 2. 동일 석방되어 본거지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에 귀가하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교통과 일체의 통신이 두절되어 항소를 제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항소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.
- 3. 이러한 사실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

2000. 0. 0.

위 청구인(피고인) 〇 〇 〇 (인)

제출기관	원심법원{※아래(1)참조} (형사소송법 346조1항)	제출기간	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
청구권자	※ 아래(2)참조	관 할	원심법원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345~347조
회복청구 사 유	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 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		
회복청구 방 식	1. 서면으로 원인된 사유를 소명 2. 상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함		
불복절차 및 기간	·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(형사소송법 347조2항) ·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(형사소송법 405조)		

### ※ (1) 제출기관(형사소송법 355, 344조)

- 1.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회복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제기기간내에 회복청구한 것으로 간주
- 2. 피고인이 상소회복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

#### ※ (2) 상소권회복청구권자(형사소송법 345조)

- 1. 검사
- 2. 피고인
- 3. 피고인의 법정대리인
- 4.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,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
- 5. 항고권자(형사소송법 345, 339조)